

『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지연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도농복합도시인 구미의 실정에 맞게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과 도시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도시민에게는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
라.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
(안 제7조~제12조)

마. 준용 및 시행규칙(안 제13조~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,
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3. 3. ~ 3. 8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」은,
 -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여 도시민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,
 - 관내 운영 중인 농촌 체험휴양마을은 춤새마을(무을면), 모레 가정권역(도개면), 한뜸골(옥성면) 3개소로써, 도시와 농촌이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 도농간 교류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요즘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시행 계획의 수립, 위원회 운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